

경운대학교 교통비지급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직원 보수규정 제30조에 의거 교통비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교직원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는다.

제3조(지급일) 총장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액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4조(예외) 전용차량(전속기사 포함)을 제공받는 교직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